

[] 현금거래 확인신청 [] 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신청인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
	④ 전화번호 (자택) (직장) (휴대전화)		
공급자 (발급 거부자등)	⑤ 상호(법인명)	⑥ 사업자등록번호	
	⑦ 성명(대표자)	⑧ 전화번호	
	⑨ 소재지		
신고 유형	⑩ 신용카드 등	[]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	
		[]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	
	⑪ 현금영수증	[]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	
		[]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	
		[]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	
		[]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(미가맹점 포함)	
[]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			
신고 내용	⑫ 거래일		⑬ 거래가액
	⑭ 품목	⑮ 수량	⑯ 단가
	⑰ 거래증명		
	⑱ 그 밖의 참고사항		

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[] 「국세기본법」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, [] 「소득세법」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 제5항, [] 「법인세법」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
지방국세청장 귀하
국세청장

첨부서류	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	수수료 없음
포상금 지급계좌	은행 지점	계좌번호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(현금영수증 관련은 5년 이내를 말합니다 단,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(미가맹점 포함),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는 3년 이내를 말합니다.)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.
2. 공급자(발급거부자 등)란은(⑤~⑨)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. 추가사항은 "⑬ 그 밖의 참고사항"란에 적습니다.
3.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"√"표시를 하며,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. ⑩ 신용카드 등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다른 직불카드,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합니다.
4. "⑬ 그 밖의 참고사항"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※ 신고서의 처리

- 1)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 -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며,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 -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2)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.
- 3)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 등이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.